철 도 설 계 지 침 (건축/검수시설편) (개정전)

2006. 5. 25 제정 2008. 6. 24 개정 2010.12. 30 개정 2011.12. 1 개정 2012. 1. 30 개정 2012. 5. 30 개정 2012. 8. 13 개정

2012. 08.



철 도 설 계 지 침 (건축/검수시설편) (개정후)

2006. 5. 25 제정 2008. 6. 24 개정 2010.12. 30 개정 2011.12. 1 개정 2012. 1. 30 개정 2012. 5. 30 개정 2012. 8. 13 개정 2012. 9. 개정

2012. 09.



현행('12.08)	개정(안)	비고
1.1.3 관련 법규 및 규정 (1) 건축 관계 법규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이하 중략)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1.3 관련 법규 및 규정 (1) 건축 관계 법규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이하 중략)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신설)	-연구용역 결과 반영(녹색철도 연구원)
제 2 장 프로그래밍 2.3 재료 2.3.2 재료선정 (1) 재료선정의 프로세스: 내용 중략 (2) 재료 선정시 유의사항: 내용 중략 (3) 각부의 재료 및 공법 선정기준: 내용 중략	제 2 장 프로그래밍 2.3 재료 2.3.2 재료선정 (1) 재료선정의 프로세스: 내용 중략 (2) 재료 선정시 유의사항: 내용 중략 (3) 각부의 재료 및 공법 선정기준: 내용 중략 (4)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마감재료 및 공법의 선정기준(신설) ① 선로 측으로 노출된 부위의 창호 및 외장재는 차음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한다. ② 소리가 발생하는 음원 쪽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③ 소음·진동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이중벽 설치를 고려한다.	-연구용역 결과 반영(녹색철도 연구원)

현행('12.08)	개정(안)	비고
제 3 장 건 축 설 계	제 3 장 건 축 설 계	
3.1 건축물별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1) 기본 방향: 내용 중략 (2) 적용 범위: 내용 중략 (3) 설계 주요 고려사항: 내용 중략 (4) 기타 고려사항: 내용 중략 (5) 철도운행시설(선로, 승강장 등) 설계기준: 내용 중략	3.1 건축물별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1) 기본 방향: 내용 중략 (2) 적용 범위: 내용 중략 (3) 설계 주요 고려사항: 내용 중략 (4) 기타 고려사항: 내용 중략 (5) 철도운행시설(선로, 승강장 등) 설계기준: 내용 중략 (6) 소음·진동 저갑을 위한 철도역사의 공간배치 고려사항(신설) ① 철도역사 형식에 따른 공간배치 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열차의 소음·진동에 민감한 역무시설 등은 소음·진동원으로부터 최대 이격시켜야 하고, 선로 직상부·직하부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③ 소음·진동원과 소음·진동에 민감한 역무시설 등의 사이에는 차폐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고려한다. ④ 소음의 직접유입이 가능한 창이나 개구부의 위치는 선로 반대 측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연구용역 결과 반영(녹색철도 연구원)

현행('12.08) 개정(안) 비고 제 5 장 건축환경및 설비 제 5 장 건축환경및 설비

5.1 건축 환경

5.1.5 음환경

(1) 실내의 잔향시간 : 내용 중략

(2) 소음기준

표5-5 철도교통 소음의 한도

[단위 : Leg dB(A)]

적용대상지역	'10.1.	1부터
শ্বদাস্থ	06:00~22:00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		
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	70	60
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	70	60
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	75	65
지구, 미고시지역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철도설계편람(건축편)]

5.1.5 음환경,

표3-5-41 역시설 소음기준

등급	시설명	소음레벨(dB)	인체에 미치는 생리영향
1	역장실, 대회의실, 휴양 실 등	40이하	수면에 영향 없음
1 7	교양실, 소회의실, 종합 통제실, 매표실 등	45이하	뇌파에 변화 수면영향 없음
3	역무실, 대합실, 판매시 설, 은행, 안내실, 식당 등	55이하	호흡, 맥박증가 수면방해 1.3m거리에서 회하가능
4	승강장, 콘크스, 출입홀	60이하	수면방해(상업, 주거지역)

5.1 건축 환경

5.1.5 음환경

(1) 실내의 잔향시간 : 내용 중략

(2) 소음기준

표5-5 철도교통 소음의 한도

[단위 : Leq dB(A)]

적용대상지역	'10.1.	1부터
শ্ভদাওশ্	06:00~22:00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70	60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 미고시지역	75	65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고속철도 역사 형식별 실내소음 권장기준은 표5-6와 같다.(신설)

표5-6 철도역 형식별 실내소음레벨 권장기준

소음레벨 단위 : Leq(h) [dB(A)], ref. 2×10⁻⁵ Pa

등급	철도역 공간의 용도	고속철도 역사 [†] 소음레벨 권장				
			지하역	선상역	선하역	
1	역무실 등	45	45	50	50	
2	콘코스, 대합실 등	60	60	65	65	
3	여객통로, 흰숭통 로 등	65	65	70	70	
4	승강장	80	80	85	85	

-연구용역 결과 반영(녹색철도 연구원)

현행('12.08)			개정(안)			則五
3) 방음 및 방진설계 ① 설계상의 목표 : 내용 중략 ② 방진설계(진동기준) 표5-7 철도교통 진동의 한도			(3) 방음 및 방진설계 ① 설계상의 목표 : 내용 중략 ② 방진설계(진동기준)			
적용대상지역 [단위 : Leq dB(A)]		1부터 22:00~ 06:00	표5-7 철도교통 진동의 한도 적용대상지역 [단위 : Leq dB(A)]	'10.1. 06:00~ 22:00	.1부터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이상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65	6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 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 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50m 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표5-8 고속철도 역의 진동기준

등급	시설명	진동가속도 레벨(dB)	인체 및 건물에 미치 는 영향
1	전신전화국, 전화교환 실, 방송실	60	미진(인체로 약간 느낌) 수면에 영향 없음
2	역장실, 역무실, 회의실, 교양실, 종합통제실, 휴양실	65	"
3	판매시설, 여행센터, 금융센터, 대합실, 콘코스, 유실물취급소, 물품보관소, 파출소, 우체국, 민원센터, 개집표실, 정산실, 매표실, 안내실, 식당, 출입홀	70	경진(크게 느낌) 수면심도 1로서 얕은 수면은 무 관.

③ 고속철도 역사 형식별 실내진동가속레벨 권장기준은 표5-8와 같다.(신설)

표5-8 철도역 형식별 실내진동가속도레벨 권장기준

진동가속도레벨 단위 : [dB], ref. 10^{-5} m/sec²

등급 철도역 공간의 용도		고속철도 역사형식별 진동가속도레벨 권장기준				
ਰ Ħ	설보기 8선의 등도	지상역	지하역	선상역	선하역	
1	역무실 등	70	65	70	80	
2	콘코스, 대합실등	80	70	75	85	
3	승강장	85	80	85	90	

-연구용역 결과 반영(녹색철도 연구원)

현행('12.08	3)	개정(안)	비고
) 흡음 및 방진계획		(4) 흡음 및 방진계획	
① 흡음계획		① 흡음계획	
가. 지하철도역에서의 소음기준		가. 대합실, 승강장 : 열차의 소음이 차단되도록 승강장 하단부에 흡음판	
① 대합실, 승강장 : 열차의 소음이 ㅊ	나단되도록 승강장 하단부에 흡음	을 설치한다.	
판을 설치한다.		나. 일반기능실 : 천장에 무석면 흡음텍스로 마감하여 흡음성능을 향상	
⑤ 일반기능실 : 천장에 무석면 흡음	섹스로 마감하여 흡음성능을 향상	다. 기계실 : 이중벽을 설치하고 벽체 사이에 흡음재를 충전하여 기계실	
ℂ 기계실 : 이중벽을 설치하고 벽체	사이에 흡음재를 충전하여 기계	의 소음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의 소음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5-9 지하역에서의 소음기준		표5-9 지하역에서의 소음기준(삭제)	
분 류	설계목표치 (최대소음기준)		 - 지 하 역 에 /
승강장 (열차의 도착, 출발시)	80 dB(A)		의 소음기·
승강장 (열차통과시)	85 dB(A)		은 역사 형
대합실 (열차통과시)	65 dB(A)	삭제	별 기준에 .
승강장, 대합실	55 dB(A)	7/11	함되어 중.
통제실 (환기 및 기타 설비가 작동시)	45 dB(A)		되므로 삭
승강장 (주파수 500Hz의 최대잔향시간)	1.1~1.4초		함.
			1

② 방진계획

가. 회전기계류는 진동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고 방진재로 지지케 하여 진동에너지(진폭, 가속도, 소음)를 흡수하도록 한다.

나. 환기덕트에는 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덕트 고정용 달대를 독립 하여 설치한다.

다. 공간벽체는 보강블럭조의 경우 5m마다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

② 방진계획

- 가. 회전기계류는 진동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고 방진재로 지지케 하여 진 동에너지(진폭, 가속도, 소음)를 흡수하도록 한다.
 - 나. 환기덕트에는 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덕트 고정용 달대를 독립하 여 설치한다.
 - 다. 공간벽체는 보강블럭조의 경우 5m마다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한다